

사 업 방 법 서

사 업 방 법 서

1. 보험종목의 명칭 :

- 엘리트교육보험
- 엘리트교육보험 피보험자입원특약

2. 가입연령

- 가. 계약자 및 계약자의 배우자 : 18세 ~ 60세
나. 피보험자 : 0세 ~ 15세

3. 보험기간: 피보험자연령 24세 만기

4.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2세납, 15세납, 18세납

5. 금리차보장에 관한 사항

가. 배당대상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년도중의 정기에
금이율(이하 "정기에금이율"이라 한다) - 0.5% 보다 낮은 보험으로서
매 보험년도말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한다.

나. 배당방법

- ①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중의 정기에
금이율 - 0.5%와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② 제 1항에 의한 금리차보장준비금에 대하여 매년 정기에금이율로 부
리 적립한다.
- ③ 피보험자 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그 때까지 적립된 금리차보장준비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④ 동일 보험년도중 정기에금이율이 변동할 경우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6.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 연령 만17세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금리차보장준비금과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하 "금리차보장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합하여 "배당준비금"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다음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① 배당준비금을 8회로 균등 분할하여 피보험자 연령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의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해당 학자금 지급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② 배당준비금을 4회로 균등 분할하여 피보험자연령 만22세부터 만23세까지의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해당 학자금 지급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③ 배당준비금을 12회로 균등 분할하여 피보험자연령 만18세부터 만23세까지의 생존학자금 지급시기에 해당 학자금 지급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나.(가) 항에 규정된 배당금 지급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부터 만23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발생하는 금리차보장금과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배당금(이하 “금리차보장금”과 “계약자 배당금”을 합하여 “배당금”이라 한다)을 2회로 균등분할하여 해당연령의 학자금 지급시기에 학자금 지급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다.(가)항 및 (나)항에서의 배당준비금과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기전에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잔여 배당준비금과 배당금을 그때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라.(가)항 및 (나)항에 규정된 배당금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준비금 및 배당금을 정기에금이율로 부리 적립한후 계약소멸시 일시에 지급한다.

7. 부가하는 특약

엘리트교육보험 피보험자입원특약, 재해관련특약, 단체취급특약, 표준미달체특약, 계약전환특약, 비흡연자할인특약, 연금전환특약,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약, 자유설계특약

8. 기 타

-태아(胎兒) 가입시의 처리

가. 이 보험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나. 출생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출생전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보험금(유자녀생활자금 1회분,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다. 태아가입건의 7회차 유지율이 출생후 가입건의 7회차 유지율보다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10%이상 낮게 나타나는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한다.

라. 주보험 약관 제 6조(계약의 무효)및 유산 또는 사산을 제외한 무효의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전액 환수한다.